

투자 위험 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호**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3년 3월 2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년 4월 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0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MMF 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0.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2.02.20 ~ 23.02.19	최근 2년 21.02.20 ~ 23.02.19	최근 3년 20.02.20 ~ 23.02.19	최근 5년 18.02.20 ~ 23.02.19	설정일 이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2011-01-25	2.66	1.80	1.53	1.62	2.05
	비교지수(%)		2.35	1.53	1.22	2.59	1.85
	수익률변동성(%)		0.12	0.15	0.13	0.10	0.11
	* 비교지수: 매경BP Call 100%(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 단기금융) (단위: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가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서경화	1975년	책임(팀장)	6	91,689	2.63	1.77	2.63	1.77	14년 5개월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신용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주요투자 위험	구 분									
	신용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	--	--	--	--	--	--	--	--	--	--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2영업일(D+1)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D+2)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종류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한 과세-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 지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한화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whafund.com)		
모집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제한없음
효력 발생일	2023년 4월 1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기관, 랩 (w)	법인 전용으로, 판매회사의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 금전신탁,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계약 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P)		법인 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호	260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CF5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랩(C-w)	CF5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P)	CG7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Pe)	CG77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단기금융(법인용)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명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1좌 = 1원, 원본액 기준)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 Hanwhafund.com](http://www.Hanwha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호	260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CF5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랩(C-w)	CF5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P)	CG7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Pe)	CG77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0. 03. 19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괄신고서(전환신고서) 제출 (한화 신종 MMF W13호 →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호(국공채))
2010. 11. 15	운용보수, 판매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인하
2011. 01. 19	투자대상 자산의 확대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
2013. 01. 02	판매회사보수 인하 (0.08% → 0.06%)
2014. 02. 21	투자신탁보수 인하
2014. 12. 2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오현세 → 전용일)
2015. 07. 30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전용일 → 박하나)
2015. 09. 24	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박하나 → 박하나, 김현주)
2016. 07. 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반영: 5등급(매우 낮은 위험) → 6등급(매우 낮은 위험)
2017. 02. 0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박하나, 김현주 → 이상준)
2017. 12. 27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이상준 → 서경화)
2018. 09. 20	-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변경 이전의 기존 수익자의 경우에는 종류 C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간주) - 종류 수익증권(종류 C, C-w) 추가
2018. 10. 22	종류 수익증권(종류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추가
2019. 09. 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9.08.01) 반영
2020. 03. 20	전자증권제도 시행 반영
2021. 02. 17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21.02.01) 반영
2022. 04. 0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22.04.01) 반영
2023. 02. 28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수익률 변동성 변경 (0.06% → 0.12%)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펀드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관련 항목 및 문구 업데이트

2023. 04. 01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개정사항 반영 안정적 자산 투자비중 (30% 이상) 및 선환매유인 관리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4.01 시행)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02.20 개정)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의 종료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63 (대표전화: 02-6950-0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23. 02. 19)

구분	성명	생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국내 단기금융, 단위 %)				주요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 가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팀장)	서경화	1975	6	91,689	2.63	1.77	2.63	1.77	- <u>운용경력년수 14년 5개월</u> - 부산대 사회학 학사 - 한화자산운용(2000.1 ~ 현재)

주 1) 이 투자신탁은 머니마켓팀이 팀제로 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 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7.12.27	이상준	서경화

다. 최근 3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단기금융(법인용),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 투자자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기관, 랩 (w)	법인 전용으로, 판매회사의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 금전신탁,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변액보험계약 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P)	법인 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각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는 법인 투자자만 가능하며,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금전신탁의 가입 역시 법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2018년 9월 20일자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이전에 이미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고 있는 수익자의 경우에는 종류C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간주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대상 세부조건
1. 양도성 예금증서	잔존만기 6개월 이내
2. 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사채권(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채무증권(법 제4조 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
3. 어음 등	-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기업어음증권 제외) 및 채무증서 - 잔존만기가 1년 이내
4.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5. 금융기관 예치	만기 6개월 이내의 금융기관 예치
6. 집합투자증권등	-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

7. 전자단기사채등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함
8.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	
9.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어음등 포함) 신용등급	-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2개등급"이라 한다) 이내(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 적용)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음 ·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매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 인과는 거래 불가능
② 동일종목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②-1.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행위 가. 채무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 로 하며, 만기 80 일 이상 100 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어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0 분의 5). 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동일인 발행 채권증권 및 그 동일인과의 거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취득 또는 거래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1) 만기 30 일 이내일 것 (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 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
④가중평균 잔존만기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60일을 초과하는 행위.
⑤국채증권에의 투자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다른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10%이상 투자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현금

	나. 국채증권 다. 통화안정증권 라. 잔존만기가 1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2)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 71 조제 4 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3) 영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전자단기사채 마. 환매조건부매수 바. 단기대출 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예의 예치
⑧30%이상 투자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⑦의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 나. 잔존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⑦ 라목의 (1) 내지 (4)에 해당하는 자산 다. ⑦의 마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⑩기타	-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나. 위의 가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하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 양도성 예금증서
4.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5.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6.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③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⑥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우량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 또한 수시입출금에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위험관리는 신용평가등급 제한 및 펀드의 듀레이션 조절전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매경BP Call 100%

매경BP Call: 한국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단기자금시장지수 중 하나로서, 콜금리의 변동성과 성과를 보여주는 유동성 지수

주1)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산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방안이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비중(30%)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방안, 평가방법 변경(시가평가),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의 외의 과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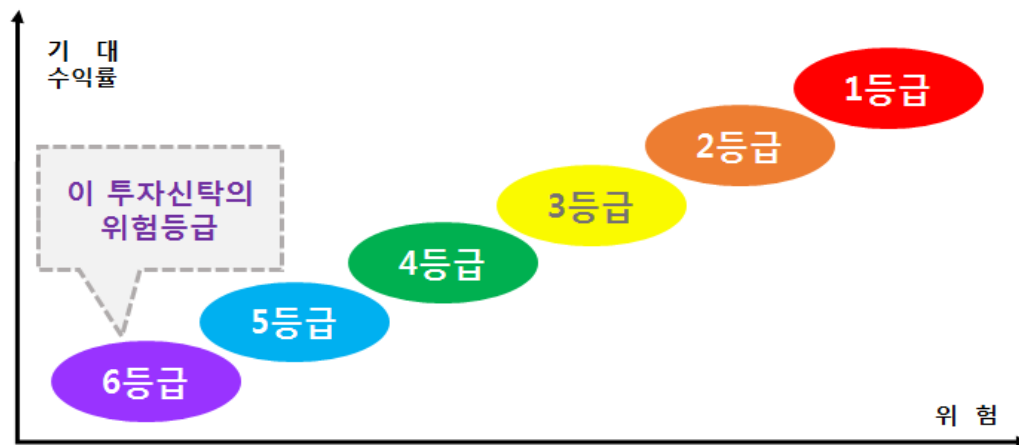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투자설명서 '2부. 집합투자에 관한사항'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환매'의 '(7)수익증권 환매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연환산 표준편차: 0.12%)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단기자금의 운용을 위해 약간의 가격변동 위험과 신용위험 등을 부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25% 초과
2등급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 ¹⁾ 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25% 이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15% 이하
4등급	보통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 ²⁾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10% 이하

5등급	낮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저위험자산 ³⁾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5% 이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0.5% 이하

-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등급 이상), CP(A2- 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5) 모자구조의 자펀드인 경우 모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편입비율 및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함
- 6)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형(Fund of Funds)의 경우 주로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부여함
- 7) 펀드별 위험등급은 투자지역, 투자전략, 투자구조, 담보, 신용보강, 레버리지수준, 환위험 노출도, 신용위험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8)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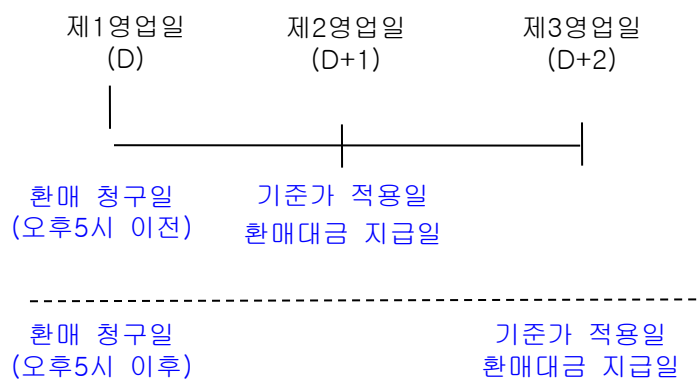
(2)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D+1)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3)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환매시(오후5시 이전 기준)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 환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별첨1'에서 정한 경우에는 당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실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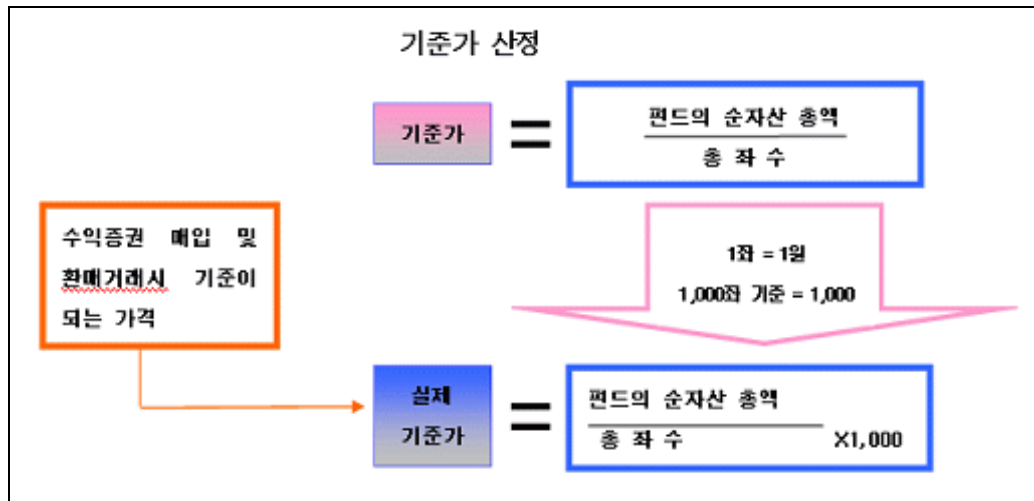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종류수익증권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보수가

기준가격	상이하므로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

주) 공휴일, 국경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MMF)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종류별로 다음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채권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한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자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

(2) 집합투자업자는 (1)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2)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정적 자산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1. 안정적 자산 비중 감소, 장부가가치가 괴리율 확대 등 선환매유인 발생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4)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6) 집합투자업자는 (5)에 따른 투자신탁재산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투자신탁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②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③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 (비상장주식, 비상장채무증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 1. 취득가격 2. 거래가격 3.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투자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팀장 등
- 2) 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랩(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P)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Pe)				

주1) 각 클래스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에서 '나. 종류형 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랩(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R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RPe)	
집합투자업자보수	0.0400	0.0400	0.0400	0.0400	최초설정일 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400	0.0000	0.0240	0.0120	
신탁업자보수	0.0120	0.0120	0.0120	0.012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050	0.0050	0.0050	0.0050	
총 보수	0.097	0.057	0.081	0.069	
기타비용	0.0045	0.0045	0.0038	0.0043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1015	0.0615	0.0848	0.0733	-
동종유형 총보수	0.15	-	-	-	-
합성 총보수·비용	0.1015	0.0615	0.0848	0.0733	-
증권 거래비용	0.0040	0.0042	0.0042	0.0043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회계감사비용,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기타비용	81,959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73,971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 ① 기타비용 종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약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③ 금융비용 종류: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금융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	21	33	57	13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	21	33	57	1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	13	20	35	7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6	13	20	35	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R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	17	27	47	10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	17	27	47	1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R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	15	24	41	9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	15	24	41	94

주) 투자자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종류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종류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한 과세-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 세액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 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수익자가 얻은 소득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시점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시 퇴직/연금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2 기(2022.01.25 - 2023.01.24)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11 기(2021.01.25 - 2022.01.24)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10 기(2020.01.25 - 2021.01.24)	삼화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2 기	제 11 기	제 10 기
	(2023.01.24)	(2022.01.24)	(2021.01.24)
운용자산	606,222,513,128	973,476,577,124	2,777,523,208,172
증권	606,166,768,927	913,846,506,789	2,667,516,130,40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5,744,201	59,630,070,335	110,007,077,771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741,841,554	4,538,487,210	8,738,058,362
자산총계	609,964,354,682	978,015,064,334	2,786,261,266,53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782,626	7,011,584	10,056,165,364
부채총계	5,782,626	7,011,584	10,056,165,364
원본	594,613,879,813	968,290,265,096	2,744,804,754,891
수익조정금	-26,433,822,994	-12,869,988,252	8,019,917,269
이익잉여금	41,778,515,237	22,587,775,906	23,380,429,010
자본총계	609,958,572,056	978,008,052,750	2,776,205,101,170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2 기	제 11 기	제 10 기
	(2022.01.25 - 2023.01.24)	(2021.01.25 - 2022.01.24)	(2020.01.25 - 2021.01.24)
운용수익	41,892,114,031	22,717,197,607	23,504,975,029
이자수익	42,004,313,580	28,616,239,565	27,277,947,087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호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12,199,549	-5,899,041,958	-3,772,972,058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13,598,794	129,421,701	124,546,019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13,598,794	129,421,701	124,546,019
당기순이익	41,778,515,237	22,587,775,906	23,380,429,010
매매회전율	0.00	0.00	0.00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12기(2023.01.24)		제11기(2022.01.24)		제10기(2021.01.24)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55,744,201		59,630,070,335		110,007,077,771
1. 현금및현금성자산	55,744,201		86,604,914		77,361,506	
2. 예치금			59,543,465,421		109,929,716,265	
3. 증거금						
대출채권		268,435,189,944		518,288,307,715		996,323,097,50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03,300,000,000		3,400,000,000		160,600,000,000	
3. 매입어음	165,135,189,944		514,888,307,715		835,723,097,500	
4. 대출금						
유가증권		337,731,578,983		395,558,199,074		1,671,193,032,901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37,731,578,983		395,558,199,074		1,671,193,032,901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741,841,554		4,538,487,210		8,738,058,362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3,741,841,554		4,538,487,210		8,738,058,362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609,964,354,682		978,015,064,334		2,786,261,266,534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5,782,626		7,011,584		10,056,165,364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0,044,250,000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782,626		7,011,584		11,915,364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5,782,626		7,011,584		10,056,165,364
자 본						
1. 원 본	594,613,879,813		968,290,265,096		2,744,804,754,891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5,344,692,243		9,717,787,654		31,400,346,279	
(발행좌수 당기: 594,613,879,813 좌						
전기: 968,290,265,096 좌		41,778,515,237		22,587,775,906		23,380,429,010
전전기: 2,744,804,754,891 좌)		-26,433,822,994		-12,869,988,252		8,019,917,269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609,958,572,056		978,008,052,750		2,776,205,101,17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09,964,354,682		978,015,064,334		2,786,261,266,534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12기(2022.01.25-2023.01.24)		제11기(2021.01.25-2022.01.24)		제10기(2020.01.25-2021.01.24)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42,004,313,580		28,616,239,565		27,277,947,087
1. 이 자 수 익	42,004,313,580		28,616,239,565		27,277,947,087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605,101,102		92,459,674		234,704,504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298,284,119		57,228,217		35,576,699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306,816,983		35,231,457		199,127,805	
7. 기타거래차익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717,300,651		5,991,501,632		4,007,676,562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449,621,297		5,945,168,751		3,946,715,594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267,679,354		46,332,881		60,960,968	
8. 기타거래차손						
운 용 비 용		113,598,794		129,421,701		124,546,019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13,598,794		129,421,701		124,546,019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41,778,515,237		22,587,775,906		23,380,429,01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70261588		0.023327484		0.00851806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1.25 - 2023.01.24	9,683	9,683	112,834	113,634	116,571	117,635	5,946	6,100
2021.01.25 - 2022.01.24	27,448	27,448	163,360	164,029	181,125	181,922	9,683	9,780
2020.01.25 - 2021.01.24	22,451	22,451	130,482	131,368	125,485	126,291	27,448	27,762

가. 종류형 펀드 (단위: 억좌, 억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1.25 - 2023.01.24	9,612	9,612	93,473	94,148	98,525	99,364	4,561	4,674
2021.01.25 - 2022.01.24	25,728	25,728	163,035	163,630	179,151	179,852	9,612	9,699
2020.01.25 - 2021.01.24	22,468	22,468	126,138	126,943	122,878	123,603	25,728	25,9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랩(C-w)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1.25 - 2023.01.24	70	70	19,276	19,360	17,970	18,144	1,376	1,411
2021.01.25 - 2022.01.24	1,743	1,743	66	66	1,738	1,747	70	71
2020.01.25 - 2021.01.24	1	1	3,993	4,004	2,251	2,270	1,743	1,7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1.25 - 2023.01.24	0	0	8	8	6	7	1	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P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1.25 - 2023.01.24	9	9	21	21	17	17	13	13
2021.01.25 -	2	2	18	19	11	12	9	9

2022.01.24								
2020.01.25 - 2021.01.24	1	1	4	4	3	3	2	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2.02.20 ~ 23.02.19	21.02.20 ~ 23.02.19	20.02.20 ~ 23.02.19	18.02.20 ~ 23.02.19	11.01.25 ~ 23.02.19
한화스마트 법인 MMF 1 호	2.76	1.90	1.63	1.71	2.09
비교지수	2.35	1.53	1.22	1.35	1.34
수익률변동성(%)	0.12	0.15	0.13	0.10	0.11
수수료미장구-오프라인(C)	2.66	1.80	1.53	1.62	2.05
비교지수	2.35	1.53	1.22	2.59	1.85
수수료미장구-오프라인-기관 랩(C-w)	2.70	1.84	1.57	-1.83	0.60
비교지수	2.35	1.53	1.22	-0.70	0.49
수수료미장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P)	2.62	1.30	0.86	0.52	0.21
비교지수	2.30	1.14	0.76	0.46	0.19
수수료미장구-온라인-퇴직연금 (C-RPe)	2.69	1.83	1.55	1.31	0.54
비교지수	2.35	1.53	1.22	1.06	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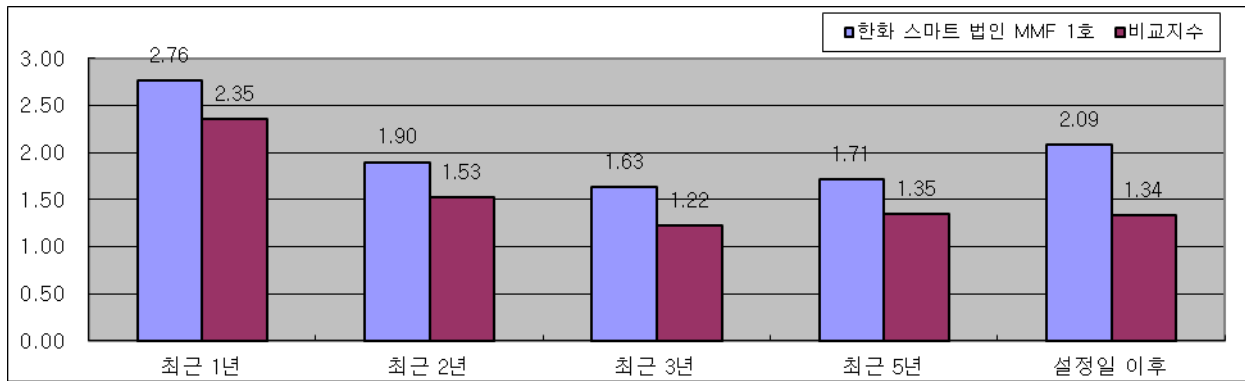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1 * [매경BP_MMI_CALL지수])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2.02.20 ~ 23.02.19	21.02.20 ~ 22.02.19	20.02.20 ~ 21.02.19	19.02.20 ~ 20.02.19	18.02.20 ~ 19.02.19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 호	2.76	1.04	1.09	1.84	1.85
비교지수	2.35	0.72	0.60	1.53	1.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66	0.94	0.99	1.74	1.81
비교지수	2.35	0.72	0.60	1.53	7.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랩(C-w)	2.70	0.98	1.03	1.78	
비교지수	2.35	0.72	0.60	1.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P)	2.62	0.00	0.00	-0.51	
비교지수	2.30	0.00	0.00	-0.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Pe)	2.69	0.97	1.02	1.78	
비교지수	2.35	0.72	0.60	1.53	

주1) 비교지수: (1 * [매경BP_MMI_CALL지수])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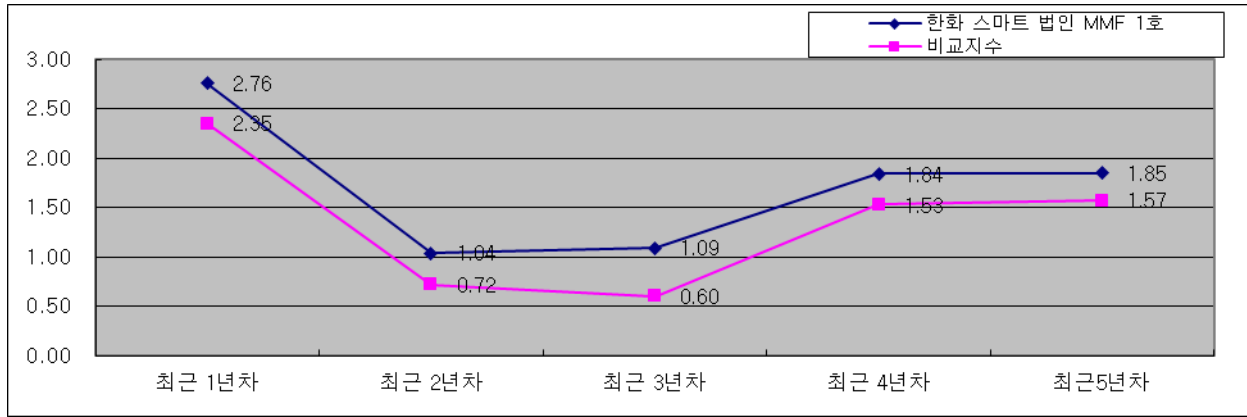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3. 01. 24 기준, 단위: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3,385	1,651	0	0	0	0	0	0	18	1,045	6,100
	(0.00)	(55.49)	(27.07)	(0.00)	(0.00)	(0.00)	(0.00)	(0.00)	(0.00)	(0.30)	(17.14)	(100.00)
합계	0	3,385	1,651	0	0	0	0	0	0	18	1,045	6,100
	(0.00)	(55.49)	(27.07)	(0.00)	(0.00)	(0.00)	(0.00)	(0.00)	(0.00)	(0.30)	(17.1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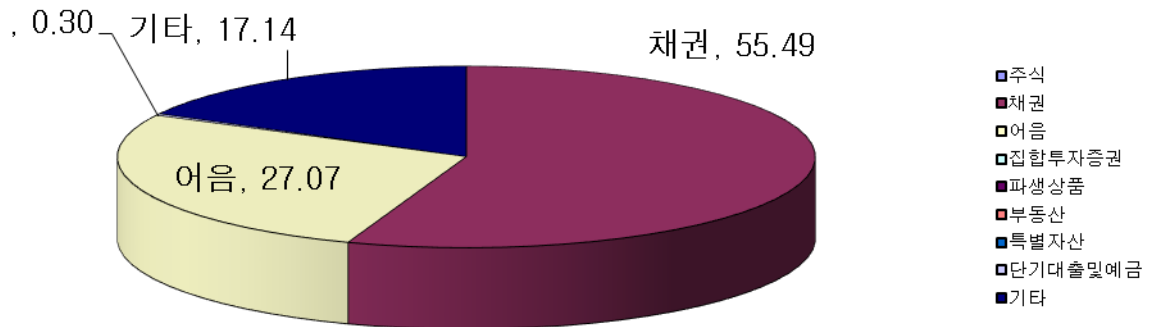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 2)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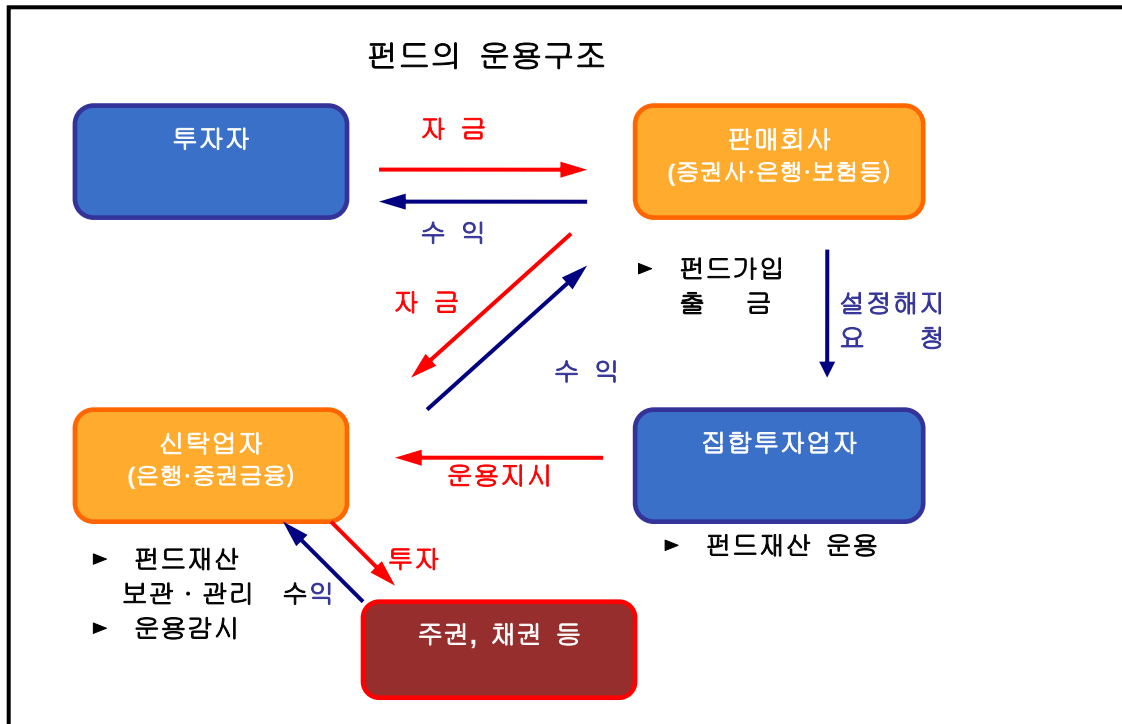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단기대출및예금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63 (전화) 02-6950-0000	
홈페이지	www.hanwhafund.com	
회사연혁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	
	푸르덴셜 자산운용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 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 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자회사로 편입, 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한화투자 신탁운용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자본금	1조 700억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목	제35기 (22.12.31)	제34기 (21.12.31)	항목	제35기 (22.1.1 ~22.12.31)	제34기 (21.1.1 ~21.12.31)
자 산			영업수익	139,376	130,406
현금및현금성자산	71,700	53,054	영업비용	105,389	97,473
예치금	1,077	332	영업이익	33,987	32,93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40,590	147,540	영업외수익	22,423	1,21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9,896	34,979	영업외비용	60,629	7,918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955,577	813,934	법인세차감전	-4,219	26,231
대출채권	1,712	1,418	법인세비용	-655	7,645
유형자산	8,910	13,872	당기순이익	-3,563	18,586
무형자산	4,665	9,481			
이연법인세자산	10,340	-			
기타금융자산	54,950	54,020			
기타자산	1,369	1,162			
자 산 총 계	1,380,785	1,129,792			
부 채					

예수부채	1,121	1,218			
차입부채	-	245,000			
충당부채	952	1,057			
순확정급여부채	-3,127	-2,216			
당기법인세부채	11,060	3,761			
이연법인세부채	-	21,101			
리스부채	4,766	8,224			
기타금융부채	15,513	16,029			
기타부채	1,250	1,177			
부 채 총 계	31,536	295,351			
자					
자본금	1,070,000	570,000			
기타불입자본	3,459	5,868			
기타자본구성요소	927	-2,484			
이익잉여금	274,863	261,057			
자 본 총 계	1,349,249	834,44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380,785	1,129,792			

라. 운용자산 규모

(2023. 02. 19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35,817	53,098	7,881	0	28,956	5,835	0	37,262	109,192	9,394	130,388	417,82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증권금융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02) 3770-6800
홈페이지 주소	www.ksfc.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02) 2168-0400
홈페이지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Pricing Inc.	FN 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02)3215-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02)721-53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보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상기 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주1)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이외의 변경사항은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회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기간: 2022. 02. 20 ~ 2023. 02. 19)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한화투자증권	특수판매회사	위탁거래	채권	10,033
외환은행 신탁부	수탁회사	위탁거래	CP	29,997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가. 증권 거래	평가항목	운용에 대한 기여도	주문체결능력	비용 또는 수익	정보제공 및 settlement	합계
	항목 가중치	50%	15%	10%	25%	100%
나. 장내 파생 상품 거래	* 각 평가항목은 5 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 척도의 환산점수는 A(10 점), B(8 점), C(6 점), D(4 점), E(2 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구분	상세
투자목적	고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및 단기자금 관리
투자금액	4,000억원 수준
투자기간 및 투자금 회수계획	- 2020년 4월 1일부터 - 사전에 정해진 투자기간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익구조 또는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환매할 예정이며, 단기자금 운용의 특성상 잦은 입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1) 투자금 환매시에는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별첨1]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환매가 가능한 경우]

- ① 주식 등 다른 증권(결제소요 2일이상)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 계좌의 입출금 예약이 있는 경우
 - 주식 매도자금 및 일반펀드 환매자금이 MMF 계좌로 자동입금 되도록 약정(또는 예약)되어 있는 경우 MMF에 납입된 자금은 당일 설정 가능
 - 주식 매수자금 및 일반펀드 매입자금이 MMF 계좌로부터 자동 출금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결제일에 MMF 당일 환매 가능

※ 약정(또는 예약) : 결제일 전일 오후 5시 이전에 약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②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오후5시 이전에 배치작업(자동이체)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당일 설정 및 환매 가능(각 판매회사별로 '사전약정에 의한 거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범위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펀드의 매도와 관련하여 MMF 계좌의 입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당일 매입 가능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펀드의 매수와 관련하여 MMF 계좌의 출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출금되는 경우 당일 환매 가능
 - CMA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익일 자동상환(CMA약관에 명기되어 있는 사정약정거래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사전약정에 의한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대출상환일에 MMF 당일환매 가능
 - 공모주 등의 청약·환불 자금과 연계하여 자동적으로 MMF 계좌의 입출금 약정이 있는 경우

주) 위의 ①, ②에 해당하는 업무는 판매회사에서 전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익일 매입·환매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과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사모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